

제22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7 월 11 일

여수시장



여수시 조례 제1901호

붙임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p>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u></p>